

# 예산총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42,282,254	4,268,468
일반회계	123,110,604	3,693,318
특별회계	19,171,650	575,150
기타특별회계	19,171,650	575,150
의료급여기금	280,391	8,412
주거환경개선사업	500,069	15,002
주차장	18,108,852	543,266
지하수관리	258,438	7,753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3,900	71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856,30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